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고령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분요구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 ◎ 과	『고령군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2	◎◎◎◎ ◎ ◎ ◎	『□□□ □□□□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3	◎ ◎ 과	『□□□ □□□□□□ 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4	◎◎◎◎과	『□□□ □□□ 및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5	◎ ◎ 과	『□□□(□□1-1□)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6	◎◎◎◎과	『□□ □□□정비공사』 외 1건 추진 부적정	시정	-	-
7	◎◎◎◎ ◎ ◎ ◎	『□□□□ □□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고령군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고령군 □□□ □□□□□□ 정비사업”을 아래
[표] 와 같이 2017. 2. 6. ‘■▲■▲(주) ☆☆☆ 외 1개사’와 계약하고 2019. 8. 8.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우수관로 터파기 관련

본 공사에서 우수관로 BB-LINE(L=1,034.5m) 매설 구간 중 일부구간(No.0~No.12+8.5, L=248.5m)은 도로 밖 농지구간으로 도로경계 옹벽보다 저지대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소음·진동 등의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관로 매설은 주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당초 설계시 야간할증이 포함되는 고가의 야간공사 구간으로 반영하여 주간공사 작업 대비 공사비 88,88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토사 운반거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7,869m³) 및 적치장 운반(토사 10,880m³)은 당초 설계상 별도 지정 장소 없이 임의의 지점(운반거리 사토 5km, 적치장 2km)에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시공에서는 사토 및 적치장 운반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소재 사토장(운반거리 1.5km)에서 처리함에 따라 토사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정

되지 않아 공사비 35,761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3. 부지임대료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공사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부지 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공사에서는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 및 적치장임대료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12,242천원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36,883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136,883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고령군 ○○○○○○○○에서는 “□□□ □□□□ □□□ □□□□ 개발사업(건축, 기계, 토목)”을 아래 [표] 와 같이 2014. 9. 2. ‘(주)■▲■▲■▲ ☆☆☆’ 과 계약하고, 2018. 4.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 □□□□ □□□ □□□□ 개발사업(조경)”을 아래 [표] 와 같이 2015. 6. 1. ‘◆◆◆◆◆(주) ★★’과 계약하고 2018. 4.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순성토 운반거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공사에서 성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순성토(토사 24,263m³) 운반은 당초 설계상 별도 지정 장소 없이 임의의 지점(토취장-현장 7km)에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시공에서는 순성토 운반을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소재 토취장(운반거리 5.34km, 감 1.66km)에서 처리함에 따라 순성토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공사비 82,5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조형물 외주가공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운반비, 외주가공비, 기계경비, 가설비 등은 경비항목으로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비의 세비목으로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본 공사에서 공원조성에 필요한 건국설화공원 조형물(12000×7800×4000) 및 동판(설명판)은 조형물 제작업체에서 직접 공장에서 제작하고, 또한 완성된 조형물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이는 외주가공비에 해당되어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제경비 24,8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3. CCTV검사 및 수밀시험 관련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05.22.)에서는 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시험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 하였다.

그런데도 본 공사에서는 우수관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CCTV검사(335m) 및 우수관거 수밀시험(13개소)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 16,5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23,8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123,80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활성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 □□□□□ 활성화사업”을 아래 [표] 와 같
이 2017. 7. 12. ‘(주)■ ■ ■ ■ ■ ☆☆☆ 외 1개사’와 계약하고 2019. 7. 6. 준공 예
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
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
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가설사무소(조립식 24개월) 230㎡와 가설창고(조립식, 24개월) 80㎡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내 다산면사무소의 기존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설사무소 무상 임대 사용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사 착공 후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비 31,57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31,57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31,57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및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 □□□ 및 □□□□ □□□□ 개발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6. 12. 21 ‘(주)■▲ ☆☆☆’과 계약하고 2018. 12. 15 준공예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통로BOX 설치 재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는 국가 등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모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재해의 원인이나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위 공사의 경우 신설되는 캠핑장 및 운영중인 관광

시설(승마체험시설 등) 이용객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제방 겸용 도시계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통로BOX(3.0×2.5, L=18.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천수가 통로BOX를 통하여 제내지에 위치한 캠핑장, 관광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BOX 전·후면에 수문 2개를 설치하고, 우수기(6월~9월)에는 캠핑장 사용을 통제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통로BOX(3.0×2.5)의 바닥고는 26.0m로 안림천의 계획 홍수위인 27.74m 보다 1.74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통로BOX를 통하여 제내지에 위치한 캠핑장, 관광시설(승마체험시설 등)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캠핑장 등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공사 준공 후 캠핑장과 관광시설(승마체험시설 등) 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로BOX와 수문 등 시설물의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이에따라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 등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 공사의 현장을 점검 한 결과 제방 겸용 도시계획도로는 주변에 국도33호선이 신설되어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도1차로 도로이며, 승마체험장 등 주변 주차장과 연계하여 150m 지점에 횡단보도가 기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캠핑장 및 관광시설(승마체험시설 등)은 물론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안정성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통로BOX(3.0×2.5)의 신설 보다는 제방 겸용 도시계획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보수·보강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

2. 사업 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도막형바닥재 포장은 기존의 자전거도로나 테마공원, 산책로 등의 시인성 향상과 기존 콘크리트포장면이나 아스콘포장면의 노면 마찰 저항력이 약한점을 보강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을 요구하는 구역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상단에 박막형으로 2~3mm 두께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표현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제외지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신설되는 주변 통행로의 최종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표층만으로 충분함에도 신설 콘크리트포장면

상단에 고가의 도막형바닥제 1,347m² 포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사비 71,81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는 재해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통로BOX 신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도막형바닥제 설치 공사비 71,81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재해의 안정성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통로BOX(3.0×2.5)의 신설 보다는 제방 겸용 도시계획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보수·보강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재검토 하고,
- ②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71,815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1-1□)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1-1□) 정비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6. 6. 13 ‘■ ■ ■ ■ ■(합) ☆ ☆ ☆’과 계약하고 2018. 3. 17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현장여건, 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는 경우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토지보상협의를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할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 일정 재검토 없이 착공계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2016. 8. 25부터 2017. 7. 28까지 약 11개월간 공사가 시공중지 되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를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2015.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따라 해마다 한번이상(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1-1□) 정비공사’의 경우 내역서에 토공 및 골재, 아스콘, 콘크리트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험비를 반영하고도 도급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받지도 않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공사는 대 가야국의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관문을 정비하는 공사이므로 주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등 조경계획이 꼭 필요함에도 기존의 가로수 등 수목 99주를 제거 후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사비 37,301천원(제경비 포함)의 낭비가 우려된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는 공정, 품질관리업무 소홀 및 총 사업비 37,301천원(제경비 포함)의 낭비가 우려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37,301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2016. 7. 27. ‘■ ■ ■ ■
(주) ☆☆☆’과 계약하고 2018. 8. 4.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총 2
건의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공사용 자재 관리 부적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
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을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방서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제품 사용시에는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 흙막이공 자재인 H형강의 경우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재사용 H형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시설 말뚝으로 시공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설계실무 요령」에는 ‘현장사무실 등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부지임대료에 제경비를 반영하는 등 공사비 5,657천원(제경비 포함, 박실 소하천 2,529, 원당 소하천 3,128)을 과다 계상하였고,

감사기간 중 “□□ □□□정비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EGI웬스(H=2.4m, 24개월) 250m와 축중계(이동식, 12개월, 4회)는 실제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비 14,469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2건의 소하천 정비공사에서는 **공사용 자재 관리 부적정** 및 **총 사업비 20,126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 20,126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고령군 ○○○○○○○○에서는 “□□□□ □□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7. 12. 21. ‘(주)■▲■▲ ☆☆☆’와 계약하고, 2019. 12. 16.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

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승모전 기단 판석 관련

승모전 기단 판석은 T=30, T=50 화강석 판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적정한데도 T=50, T=70 화강석 판석을 적용하여 공사비 1,624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전시실, 관리실 기초 관련

전시실과 관리실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규모 목조 건축물로 기초의 두께가 충분하고 부동침하의 우려가 없어 지중보가 불필요함에도 400×300 지중보를 적용하였고, 기단석 하부에는 기초가 불필요함에도 THK 300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적용하여 공사비 16,379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3. 담장 기초 관련

사괴석 담장기초는 담장의 높이가 1.5m로 부동침하 우려가 없으므로 THK 300 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THK 500 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하여 공사비 13,268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31,271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31,271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